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11. 5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10월 2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5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01년 10월 2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- 가. 제정이유
 - 경륜·경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 장외사업소의 매출액 기준금액의 일부가 영등포구 지방체육진흥지원비로 배부됨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·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(안 제3조)
- 2)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등 영등포구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(안 제4조)
- 3) 매 회기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함(안 제5조 및 7조)
- 4) 기금의 관리·운용은 구청장이 하며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·운용함(안 제6조)
- 5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함(안 제8조)
- 6)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(행정관리국장)과 기금출납원(문화체육과장)을 둠(안 제12조)

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중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(신길2동)

2001. 11. 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10월 2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5회(임사회) 제1차 위원회(2001년 10월 29일) 상정
제85회(임사회) 제2차 위원회(2001년 10월 3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강민수)

- 가. 제안이유
 -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부지매입
 -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186-355의 1필지
 - 면 적 : 1,170㎡(354평)
 - 매입예정가 : 1,330,701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본 부지는 354평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어 주차장부지로는 적합하며 주

(안) 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제3항2호의 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“1인”을 “2인”으로 수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대비표

=====

원 안	수 정 (안)
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제3항2호의 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<u>1인</u>	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제3항2호의 구의회 <u>2인</u>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의 안 번호	204
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22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경륜·경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 장외사업소의 매출액 기준금액의 일부가 영등포구 지방체육진흥지원비로 배부됨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체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1) 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·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 (안 제3조)
- 2)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등 영등포구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(안 제4조)
- 3)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함(안 제5조 및 7조)
- 4) 기금의 관리·운용은 구청장이 하며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·운용함(안 제6조)
- 5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

-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함(안 제8조)
- 6)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(행정관리국장)과 기금출납원(문화체육과장)을 둠
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경륜·경정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
- 나. 협의 : 필요없음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기타 : 조례(안) 별첨
- 마. 입법예고 : 2001. 8. 16~9. 4(20일간/특이사항 없음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·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
- 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3. 기타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- 1. 체육관,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
- 2.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
- 3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활동
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사업이나 활동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-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어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와 운용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의 결산)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획예산과장, 문화체육과장

2. 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

3.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

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
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
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·지원단체·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

4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.

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대완)

등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당산사업소가 경륜·경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작년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에서 우리구에 배분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, 본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”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,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금 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,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형평을 유지하고, 각 지역의 생활체육발전에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생활 체육단체와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원을,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(안) 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제3항제2호의 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“1인”을 “2인”으로 수정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의 안	관 련
번 호	204호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29

제 출 자 : 빈웅길위원외1인

1.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원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

2. 주요골자

안 제8조(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)제3항제2호의 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“1인”을 “2인”으 로 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